

## 양록업에서 자조금제도의 기능과 중요성

김정주 교수 / 건국대학교 생명자원 경제학과

### 5. 양록산업 자조금 사업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의무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다양한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조금의 일괄 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수행할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해야 할 대의원의 총수는 선출구별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의해 대의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대의원을 양록가들이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의무자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①.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양록농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양록산업은 역사적으로 귀족농업으로부터 시작되어 녹용의 수입개방이전까지만 해도 녹용의 생산·공급이 큰 무리 없이 세계 녹용생산의 80%를 소비하는 녹용소비왕국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녹용수입 개방경제체제가 추진되면서 수입되는 값싼 저질 녹용제품에 의해 국내산 녹용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녹용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다. 따라서 “없어서 못팔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이제 양록 농가들은 녹용을 생산하는 일보다 생산된 녹용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더욱이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양록농가는 자기가 생산하는 녹용이 초과 공급될 때에 생산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4) 한국양록협회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양록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양록 농가들의 공개 모집했다. 총 15인으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명의 생산자단체 회원, 4인은 관계공무원과 학계, 소비자단체, 유통업계에서 각각 1인씩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에서부터 사용방법까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양록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녹용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추가시장 확대를 위해 양록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수단이 국내산 녹용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소비촉진비용이며, 이 비용은 녹용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하는 양록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즉, 개방경제하의 양록경영에 있어서 값싸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녹용을 생산하는 일이 필요조건이라면, 그렇게 생산된 국내산 녹용·녹용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일은 양록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이 특정 생산자단체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 즉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자조금의 조달·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양록가인 대위원들이 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감사도 대위원이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록자조금은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부담자인 양록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다.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관련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된 한국양록 자조금 관리위원회이지 특정 생산자단체에 소속

된 양록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아니다. 다만 자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사무실을 포함한 여타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단체의 사무실에 별도의 사무국은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도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생산자단체가 그들 회원들이 생산하는 녹용의 시장확대를 위해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필연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혹시 자조금사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단체의 편익과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양록가가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와 기우이며, 차제에 그러한 기우나 오해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조금을 어디에서 수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녹용의 유통상 길목을 철저히 지켜 누출되는 부문이 없어야 한다. 예컨대 낙농의 경우 우유처리장, 소, 돼지, 육계의 경우도 축장이 유통상 길목이 된다. 이들 축산물은 우유처리장이나,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품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록의 경우 녹용이 상품화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양록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양심적인 자진납부가 다른 어느 축종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③. 자조금의 거출액 수준을 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녹용의 총생산가치를 7,620억원으로 보고 0.5%해당액 3억8천1백만원에 1차년도인 2004년에 26%를 적용, 거출 가능액을 약 1억원으로 추정하여 전체 생산액의 0.13%의 거출비율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양록협회는 지난 4

월 총 3억원(양록인 조성 1억5천만원+농림부 보조금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양록자조활동 자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거출액을 정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에 의하되 너무 많으면 참여자의 부담이 크고 너무 적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의 거출한도를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0.5%) 이내로 하되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의 거출수준은 이론적으로는 녹용·녹용제품의 소비촉진활동과 관련된 광고·홍보·교육·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 즉, 소비촉진과 관련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출금의 적절한 수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축산자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0.5%의 수준은 결코 많지 않음을 간파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의 지도감독과 자조금의 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다. 자조금제도가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운영은 철저히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생산자 집단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조금제도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공익에 관계되는 제도이므로 정부가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감독

은 철저히 하되 간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양록자조금은 목적하는 녹용·녹용제품의 소비촉진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양록농가는 물론 관련당사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더 이상 제도의 시행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된다면 그 결과는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⑤. 양록 자조금 사업에 대한 녹용수입업체의 참여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조금의 용도는 주로 녹용의 소비촉진과 연구사업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녹용의 소비가 촉진되고 녹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 그 혜택은 국산 녹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녹용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녹용에 대해서도 일정율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다만, 수입업체와 녹용생산자 단체가 얼마나 쉽게 합의를 이루어 낼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⑥. 양록관련 생산자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오직 양록가를 위한, 양록가에 의한, 양록가의 단체로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자세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양록가에 대한 철저한 봉사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은 양록농가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



렵 어렵게 제정한 의무자조금 제도가 양돈업을 제외하고는 한 발자육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난항의 원인은 결국 단체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에서부터 출발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팔을 잡아 다니다가 아이 팔을 놓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양육자조금 제도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양육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육인 스스로 나서는 선진된 제도이다. 산업면에서 우리보다 앞섰다는 미국도 축산업 자조금이 정착되는 것이 1990년대나 가능했고 일본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의무자조금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기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조금을 하느냐 마느냐는 양육인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각자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면 굳이 자조금을 들먹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밀려오는 저질 가짜 녹용이 판을 치고 그렇다고 그것을 막아줄 대안이 없다면 스스

로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나서려면 비용이 들고 비용은 스스로 각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조금 제도의 채택여부는 양육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활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끝> **인국양륙**